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성남시 수질검사 자치법규(조례,시행규칙) 일부개정		
② 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안전부 “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” 의 정비대상인 수질검사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 ○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광고 전면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과대·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제한 사항을 신설 		
③ 사업개요	<p>□ 주요 개정 내용</p> <p>『성남시 수질검사 조례』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절대 미반환 규정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질검사 수수료나 출장여비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 삭제 ○ 광고 금지 규정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규정을 완화하여 광고 결과 표시를 허용하되, 과대·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제한사항 신설 <p>『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』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신 수질검사성적서 양식으로 변경(서식4) ○ 어렵거나 필요 없는 문구 등 수정 및 삭제 		
④ 사업부서	맑은물관리사업소 물생산과	⑤ 담당자	담 당 : 이종열 부서장 : 손한기
⑥ 선정기준	⑦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	⑦ 사업기간	19. 12. 23 ~ 20. 4. 예정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요청 ‘지자체 적극행정을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(행안부)’ ‘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제출’ 공문	‘19.7.5.		오재곤 예산법무과장 임문택 법제팀장 김수은 주무관
○ 자치법규 일부개정 방침 결재 ‘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및	‘19.12.23.		은수미 시장 이한규 부시장

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보고'		장현상 맑은물관리소장 손한기과장 김진만팀장 이종열주무관
○ 입법예고 20 . 1. 6. ~ 1. 22.(22일간)	'20.1.3.	김낙중 맑은물관리소장 손한기과장 김진만팀장 이종열주무관
○ 자치법규 일부개정 최종안 결재 '성남시 수질검사 자치법규 (조례, 시행규칙) 일부개정'	'20.2.3.	은수미 시장 이한규 부시장 김낙중 맑은물관리소장 손한기과장 김진만팀장 이종열주무관
○ 조례 및 시행규칙 심의회 - 원안가결	'20.2.20.	이한규 부시장 김낙중 맑은물관리소장 손한기과장 김진만팀장 이종열주무관